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3. . . (제 회)	

신 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
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3.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에 따라 생활기반을 잃어버리게 되는 예정지역 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주민지원 대책 수립·시행자에 세종특별자치시장을 추가하도록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9314호, 2023. 3. 28. 공포, 2023. 9. 29. 시행)됨에 따라 그 시행을 위하여 예정지역 주민지원대책 수립·시행자에 세종특별자치시장을 추가하고 관련 필요사항을 세종특별자치시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예정지역 주민지원대책 수립·시행자에 세종특별자치시장을 추가(안 제28조의2제1항)

나. 예정지역 주민의 고용추천 주체에 세종특별자치시장을 추가(안 제28조의2제4항)

나. 주민지원대책 관련 필요사항을 세종특별자치시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안 제28조의2제5항 신설)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전

3) 행정규제 : 규제심사 전

대통령령 제 호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 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4항 중 “건설청장”을 각
각 “건설청장, 세종특별자치시장”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⑤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수립·시행하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주민지원
대책의 대상, 지원내용 및 방법 등 필요한 세부사항은 세종특별자치시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영은 2023년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8조의2(예정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대책) ① 법 제54조제3항에 따라 <u>건설청장</u> 또는 사업시행자가 수립·시행하여야 하는 주민 지원대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8조의2(예정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대책) ① ----- --- <u>건설청장, 세종특별자치시장</u> ----- -----.
1. ~ 4.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②·③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④ <u>건설청장</u> 또는 사업시행자는 주민의 재정착 및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에 참여하는 정부투자기관, 시공업체 등(이하 이 항에서 “사업자”라 한다)에게 예정지역 주민(예정지역에 거주하지 않는 그 자녀를 포함한다)의 고용을 추천할 수 있으며, 고용추천을 받은 사업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대한 수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u>건설청장, 세종특별자치시장</u> ----- ----- ----- ----- ----- ----- ----- ----- ----- -----.
<신설>	⑤ <u>세종특별자치시장이 수립·시행하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주민지원대책의 대상, 지원내용 및 방법 등 필요한 세부사항은 세종특별자치시 규칙으로 정한다.</u>

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토교통부 복합도시정책과	
연 락 처	(044) 201 - 3686